

조세회피기업의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haracters of Tax Avoidance Cooperate)

이상봉*
(Sang-bong Lee)

— 목 차 —

- I. 서 론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 III. 연구 설계
- IV. 실증분석결과
- V. 결 론

I. 서 론

기업이 창출한 이익 중 상당부분은 조세로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업의 입장에서 순수한 의미의 이익은 세전이익이 아닌 세후이익이 된다. 조세는 기업의 중요한 현금유출로서 세후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회피하려고 하는 유인이 항상 존재한다.

기업의 입장에서 생존을 위하여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세후 이익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조세회피를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대응하여 과세당국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세무조사이다. 즉, 과세당국은 성실한 신고 납부를 유도하고 범인의 고의 또는 오류에 의한 범인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세무조사를 받아 조세회피행위가 인정되면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는데 해당 기업은 이러한 내용을 유기증권시장공시규정 제7조 및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6조에 따라 수시공시의 “벌금 등의 부과”란 제목으로 거래소 또는 코스닥시장에 공시하게 되어 있다. 세무조사 후 세금의 추징은 당해기업이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였거나 자료제출 등의 오류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회피했

† 본 연구는 (재)제주대학교발전기금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회계학과 교수

다는 사실을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회피한 세금을 추가 납부하도록 조세당국이 기업에 강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세무조사 후 세금을 추징당한 기업은 고의성이 있건 없건 조세회피를 한 기업이라 할 수 있다.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는 과세당국 및 납세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미미한 실정이다. 기존의 대다수 연구들은 설문지를 통하여 납세자들의 조세회피행위의 동기나 영향요인(연령, 소득수준, 공평성, 제재수준 등)에 대한 연구로 조세회피행위의 규제나 대응방안에 관한 것이며 세무조사를 이용한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다. 최근에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가 회계이익을 높이려는 이익조정과 과세소득을 낮추려는 조세회피로 인하여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를 이용하여 조세회피를 측정하고 조세회피와 기업특성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들이 있으나 측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서로 상이한 연구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수집 가능한 자료를 이용하여 실제로 세무조사 결과 세액을 추징당한 기업을 대상으로 조세회피와 기업특성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추징세액은 과세당국이 적발한 기업의 실제 조세회피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세무조사를 받아 법인세 추징세액을 공시한 기업을 조세회피기업으로 보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동일연도, 동일업종의 기업을 대응표본으로 선정하여 두 집단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조세회피기업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조세회피기업과 통제기업을 비교·분석하면 조세회피기업과 재무제표 변수간의 관계가 어느 정도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세무조사대상 선정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세무조사업무 효율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Ⅱ장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된 이론과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제Ⅲ장에서는 변수의 정의와 측정 및 표본의 선정에 대해 기술한다. 제Ⅳ장에서는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연구결론 및 한계점을 제시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2.1 조세회피의 개념

조세회피(tax avoidance)란 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납세자가 조세부담의 감소를 기도

하는 것이다. 조세회피는 비록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를 기도하는 행위지만 근본적으로 사법상 유효한 행위로서 법문을 직접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세법상의 부인도 그 사법상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가산세의 제재는 가능할 수 있으나 형벌의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다. 탈세 혹은 조세포탈(tax evasion)은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서 과세요건이 충족된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닉하는 것을 말한다. 즉 조세포탈은 조세법의 규정을 직접 침해함으로써 조세를 면탈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조세법에 해당되어 형벌의 제재를 받게 된다. 따라서 조세회피는 세법규정에 대한 간접적인 침해에 그치는 반면에 탈세는 세법규정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라고 볼 수 있다(최명근 2007). 탈세는 의도적이며, 비합법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납세자가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행위에는 세무자료의 미제출, 소득의 허위신고, 재산의 은폐, 장부의 위장기재, 거래사실의 인멸 등이 있다. 합법적인 조세회피는 세법규정에 상충되거나 정면으로 세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세를 부과하려는 세법정신에는 위배되는 방법으로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려는 행위를 말한다. 탈세와 조세회피의 의미는 엄밀한 의미에서 법률적 구분은 가능할지 모르나 현실적으로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우므로 양자가 혼합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조세회피유형이 탈세인지 조세회피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고 판단하는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광범위한 의미를 가진 용어로 조세회피를 사용하기로 한다.

2.2 세무조사 관련 규정

‘세무조사’라 함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 및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행위로서 조사계획에 의해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¹⁾

세무조사는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로 구분된다. 일반조사는 특정납세자의 과세표준의 결정 또는 경정을 목적으로 조사대상 세목에 대한 과세요건 또는 신고사항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조사로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는 이를 가리킨다. 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벌을 적용시킬 목적으로 조세범처벌절차법에 근거하여 범칙혐의 사실을 조사하고 범칙자와 범칙사실을 확정하기 위해 행하는 세무공무원의 조사활동을 말한다.

현행법상 세무조사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는 국세기본법을 들 수 있으며, 국

1) 조사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련 제1661호 제1조.

세기본법상²⁾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선정된다.

① 국세청장이 신고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최근 4과세기간(또는 4사업연도) 이상 동일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하여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다만,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 우선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①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 · 교부 · 제출, 지급조서의 작성 ·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무자료거래, 위장 · 가공거래 등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④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러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조세포탈 여부에 따라 세액의 추징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세무조사에 의하여 추징을 당한 기업은 이러한 내용을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7조 및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6조에 따라 수시공시의 “벌금 등의 부과”란 제목으로 거래소 또는 코스닥시장에 공시하게 되어 있다. 다만, 세무조사에 의하여 추징을 당한 모든 기업이 공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공시하고 있으며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과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기업 간의 공시기준은 서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경우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벌금·과태료·추징금 또는 과징금 등이 부과된 사실이 확인된 때 ‘벌과금 등의 부과’의 명칭으로 공시하고 있다.³⁾ 반면, 코스닥시장 등록기업의 경우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3) 이상의 경우에만 공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⁴⁾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참조.

3)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7조. 2005년 12월 23일 개정 전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1(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5) 이상의 벌금·과태료·추징금 또는 과징금 등이 부과된 사실이 확인된 때’로 규정되어 있었다.

4)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6조. 2005년 12월 23일 개정 전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3(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15) 이상의 벌금·과태료·과징금 또는 추징금 등이 부과된 사실을 확인한 때’로 규정

2.3 선행연구의 검토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크게 세무조사와 추징세액 관련 연구 그리고 조세회피와 기업특성에 관한 연구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심충진·김문현·이종운(2006)의 연구에서는 조세부담액을 이용한 조세비용과 최대주주지분율, 외국인지분율 및 부채비율을 이용한 비조세비용이 세무조사 대상여부로 측정한 기대세무조사비용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일차적으로 검증하고 표본기업만을 대상으로 조세비용 및 비조세비용이 세무조사 후 추징세액과 관련이 있는지를 이차적으로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유효법인세율로 측정한 조세비용이 높을수록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커져서 상대적으로 기대세무조사비용이 높아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최대주주지분비율과 기대세무조사비용간에는 양(+)의 관계가 있었지만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주주지분비율과 기대세무조사비용간에는 양(+)의 유의성이 있었고, 부채비율과 기대세무조사비용간에는 음(−)의 유의성이 있었다. 한편,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만을 대상으로 조세비용과 비조세비용이 추징세액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유효법인세율로 측정한 조세비용과 추징세액은 음의 관계가 있었으며, 부채비율은 추징세액과 양(+)의 관계가 있었다. 통제변수로 사용된 기업규모, 특별손익 및 재량적 유동발생액은 추징세액과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무조사의 경험유무가 추징세액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평균적으로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기업이 더 많은 추징세액이 발생되고 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임진윤(2006)은 2000년부터 2006년 3월까지의 세무조사 추징세액을 공시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추징세액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분석 하였다⁵⁾. 분석결과, 세무조사 직전연도의 재량적 발생액은 추징세액에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익조정을 통하여 이익을 축소 조정할수록 세무조사에 의한 추징세액의 크기는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기업규모 역시 음(−)의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추징세액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세무조사 추징세액의 상대적 크기가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최대주주지분율, 기업업력 및 유가증권 상장시장 변수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 세무조사 횟수가 1회인 기업으로 표본을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무조사를 받아 추징세액을 공시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세무조사 횟수가 2회인 기업을 제외하는 것은 조세회피가능성이 높은 중요한 표본을 제외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본 연구는 세무조사를 2회 이상 받은 기업도 연구대상 표본기업으로 포함하였다.

김진희·정재욱(2006)은 기업의 조세회피와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변화와 같은 재무적 특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들은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에 기업의 조세회피정도를 나타내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선행연구를 기초로 Desai and Dharmapala (2006)가 제안한 방법⁶⁾으로 기업의 조세회피행위를 재무제표자료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그들은 총자산변화율, 법인세차감전순이익변화율, 부채비율변화율, 매출액변화율과 추정된 조세회피행위정도와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총자산,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변화율과 조세회피행위와는 양(+)의 관계, 부채비율변화율과는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그들은 총자산,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증가할수록 조세회피행위가 증가하고, 부채비율이 낮은 기업에서 조세회피행위가 증가한다는 해석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자산규모와 수익성 및 자본구조의 변화 등 재무적 특성이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윤성·김지홍·최원옥(2007)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비금융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이들 기업의 조세회피추정액과 관련성이 있는 기업특성요인 및 조세회피행위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조세회피추정액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중 총 발생액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조세회피추정액은 조세부담수준, 수익성, 소유자지배기업여부와 양(+), 조세혜택수준과는 음(-)의 유의적인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이는 조세부담수준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조세혜택수준이 감소할수록 조세회피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결과로 과도한 조세부담은 납세자의 조세회피동기를 제공한다는 가설을 지지하였다. 또한 수익성이 증가할수록 조세회피추정액이 증가하는 것은 조세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치밀한 세무전략을 수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소유자지배기업일수록 재무보고비용보다는 세무보고비용을 감소시킬 유인이 크기 때문에 조세회피추정액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둘째, 기업의 조세회피추정액은 기업가치와 양(+)의 유의적인 관련성을 보였다. 이는 조세회피를 통해 조세비용을 절감함에 따라 현금유출이 감소하여 기업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미래에 상쇄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영구적 차이를 이용하여 조세회피를 하였을 경우 기업가치에는 보다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권순창 등(2009)은 상장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Desai and Dharmapala(2006)의 방법을

6) Desai and Dharmapala(2006)는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를 이용하여 조세회피를 측정하였는데,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는 크게 회계이익을 높이려는 이익조정과 과세소득을 낮추려는 조세회피로 인하여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 중 총 발생액(이익조정행위의 대용치)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조세회피행위로 측정하였다.

이용하여 조세회피행위가 기업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기업규모가 클수록 조세회피행위는 감소하고,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조세회피가 높게 나타난다고 하고 있다. 특히 수익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조세회피유인이 클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수익성이 조세회피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나타내어 수익성이 좋지 않을수록 조세회피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선행연구들과는 상이한 결과로서 조세회피의 측정방법 및 연구대상기간의 차이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세무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접근제한성으로 인하여 매우 제한적인 표본기간만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함에 따라 연구결과의 일반화에는 한계점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⁷⁾ 또한 최근 들어서는 조세회피와 기업특성의 관련성을 검증함에 있어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에 관심을 가지고 조세회피액을 추정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 방법론 또한 추정오차의 한계점이 존재한다⁸⁾.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표본기간을 2001년부터 2010년으로 10개년 동안의 금융감독원 전자시스템에 공시된 세무조사 관련내용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추징세액은 기업의 실제 조세회피액으로 간주 할 수 있으므로 세무조사에 의한 추징세액을 공시한 기업들을 조세회피기업으로 정의하여 조세회피와 관련성이 있는 기업특성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설계

3.1 표본선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세회피기업 목록은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를 통해 입수하였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또는 코스닥에 등록된 기업 중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를 받아 법인세 등의 추징세액이 발생하였다고 공시한 기업을 표본기업으로 선정하였다. 이 중 결산기가 12월이 아닌 기업, 금융업을 영위하는 기업과 자본잠식기업은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세전이익이 음(-)인 기업은 유효법인세율을 해석할 수

7) 박수원·이효익(2005), 심충진·김문현·이종운(2006)은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금액을 이용하여 연구하였으나 자료 수집의 제한성으로 인하여 매우 제한적인 표본기간만을 사용하였다.

8) Desai and Dharmapala(2006)의 조세회피 측정 방법론을 이용하였는데 그 방법론 자체의 한계점이 있다. 즉,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단지 이익조정과 조세회피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며, 이익조정으로 인한 부분 역시 총 발생액을 통하여 완전히 통제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없기 때문에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조세회피기업에 대한 통제기업은 표본선정 과정에서의 자의성을 배제하기 위해 각 연도별로 추징세액을 공시한 기업과 산업분류상 동일산업에 속하는 모든 기업을 통제기업으로 선택하였다. 각 기업별 산업분류는 한국신용평가(주)의 KisValue에서 구분하고 있는 산업분류 중분류를 이용하였다.

분석에 필요한 재무제표 자료는 KisValue에서 추출하였다. 설명변수별 상위와 하위 1% 이내에 해당하는 값은 각 설명변수의 상·하위 1%값으로 조정(winsorization)함으로써 이상치의 영향을 제거하였다. 최종적으로 분석대상에 포함된 추징세액 공시기업은 110개 표본이고 통제기업으로 포함된 기업은 3,566개 표본이다.

<표 1> 표본의 연도별 분포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표본기업	9	19	10	30	21	6	9	3	2	1	110

3.2 변수의 정의와 측정

3.2.1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세무조사 후 추징세액을 공시한 기업은 1, 그렇지 않으면 0인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다. 세무조사 후 추징세액이 발생하여 이를 공시한 기업을 조세회피기업으로 보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비회피기업으로 분류하였다.

3.2.2 설명변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었거나 조세회피기업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으리라고 기대되는 변수들로 선택하였다.

(1) 유효법인세율

유효법인세율(Effective Tax Rate)이 높다는 것은 조세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조세부담수준이 증가하게 되면 납부세액이 증가하게 되고, 그 만큼 현금유출이 일어나

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조세회피 유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효법인세율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으며 기존 연구에서 많이 쓰이는 것으로 법인세 부담액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으로 나눈 것과 매출총이익 또는 영업이익으로 나눈 것 등이 있다. 유효법인세율의 분자는 실제 법인세 부담액을 반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나 분석대상이 되는 모든 기업의 실제 법인세 부담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많은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것과 마찬가지로 재무제표 상에 나타나는 법인세비용을 이용하였다. 한편, 유효법인세율의 분모로는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으로 선택하여 유효법인세율을 정의하였다.

$$\text{유효법인세율(ETR)} = \text{법인세비용} / \text{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 재무구조 관련 변수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일수록 상대적으로 조세회피에 적극적일 가능성이 높고, 취약한 재무구조와 높은 금융비용의 부담은 조세회피의 동기를 제공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무구조 관련변수로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을 고려하였다.

부채비율은 대표적인 재무비율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어서 부채비율은 기업의 재부구조 분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판단자료로 활용된다. 부채비율이 높을 경우 기본적으로 이자비용으로 인한 손금산입으로 인해 조세비용이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부담이 크게 되어 기업의 현금유출이 많아진다.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에서는 타인자본에 대한 지급이자에 조세정책적인 목적으로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여러 항목에 있어서 손금불산입 규정을 두고 있다.⁹⁾ 따라서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세무조정 과정에서 지급이자 등의 손금불산입액이 많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낮은 기업에 비해 조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¹⁰⁾ 선행연구에서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인하여 부채비율이 높

9)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지급이자의 종류와 순서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①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② 비실명채권·증권이자, ③ 건설자금이자, ④ 업무부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기준초과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2005년 세법개정시 폐지되었으며, 2006년에는 차입금 과다법인에 대한 타법인 주식 등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폐지되었다.

10) 신현결(2002)의 연구에 의하면 표본기업 중 55%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항목이 있었으며 평가금액이 22억으로서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윤성·이영한(2006)의 연구에 의하면 2001~2003년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한 기업은 전체 표본기업 중 25%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을수록 조세부담이 높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하였다(전규안 1997; 최순재·이성구 2005). 또한, 접대비, 기부금 등의 한도를 계산할 때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기자본금액이 이용되는데 자기자본대신에 타인자본으로 조달한 기업일수록, 즉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한도액이 줄어들어 손금불산입액이 많아지므로 조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조세회피를 할 가능성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text{부채비율(LEV)} = \text{총부채} / \text{총자산}$$

$$\text{유동비율(CR)} = \text{유동자산} / \text{유동부채}$$

(3) 현금흐름 관련 변수

조세비용은 기업의 현금유출에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작은 기업일수록 직접적인 현금유출을 수반하는 조세비용을 감소시킬 유인을 가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현금흐름관련 재무비율이 조세회피의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예상하여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을 설명변수로 포함하였다.

$$\text{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CFOTA)} = \text{영업현금흐름} / \text{총자산}$$

(4) 자본집중도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한 준비금제도 및 세액공제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의 예로는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동법 제25조), 임시투자세액공제(동법 제26조) 등의 여러 규정이 있으며, 또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상각제도를 통하여 감가상각비의 조기인식을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법인세를 이연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본집중도가 높은 기업은 감가상각대상자산이 많아 이에 대한 각종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뿐 아니라 감가상각비의 증가로 법인세비용차감전성이익도 감소하게 된다. 선행연구에서도 자본집중도가 높을수록 조세부담이 낮음을 보고하였다(전규안 1997; 김진동 2001). 따라서 자본집약도가 높은 기업은 조세회피를 하고자 하는 유인이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집약도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을 총자산으로 나눈 것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감가상각대상자산은 유형자산에서 건설중인 자산과 토지를 차감하여 산출하였다.

자본집중도(CC)=(유형자산-건설중인 자산-토지)/총자산*100

(5) 성장률 관련 변수

성장률 관련 변수로는 매출액성장률을 사용하였다. 매출이 증가한다는 것은 기업의 성장을 의미한다. 성장하는 기업은 세무계획에 유리한 자산에 대한 더 많은 투자기회가 있고, 상대적으로 내부통제기능이 떨어짐에 따라¹¹⁾ 매출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의 인식시기의 조정 등을 이용하여 세무보고이익을 줄이는 등 조세회피 가능성이 클 것이다.

매출액성장률(SALG)=매출액_t/매출액_{t-1}

(6) 수익성 관련 변수

기업의 이익성과와 조세회피에 관한 선행연구(Rice 1992)에서도 이익성과가 높은 기업이 조세회피를 할 가능성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기업의 수익성이 기업의 조세회피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설명변수에 포함하였으며 수익성 관련 변수로는 매출액순이익률을 선택하였다.

매출액순이익률(NISAL)= 당기순이익_t/매출액_t

(7) 기업규모(SIZE)

기업의 주요 특성으로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것이 기업의 규모이다. 여러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조세회피는 기업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기업규모에 따른 조세회피 차이분석의 결과는 일치되지 않은 결론을 보이고 있다. 그 중 하나는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기업은 많은 정치적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정치적 비용의 대표적인 예가 조세라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법인세부담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로비활동을 통해 조세입법과정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조세부담을 낮출 수 있고, 또한 유능한 조세전문가를 동원하여 적극적인 세무전략을 수립하고 활용함으로써 조세회피를 하는 방법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규모가 클수록 조세부담이 낮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업규모가 기업의 조세회피전략에

11) Stice(1991)는 성장률이 높은 경우 내부통제제도가 이에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내부통제제도의 유효성이 낮아진다고 주장하였다.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기업규모를 포함하였다.

기업규모의 대용치로 사용되는 총자산과 매출액 중에서 총자산이 규모의 측정치로서 매출액보다 적합하다는 선행연구(Porcano 1986)¹²⁾에 따라 기업규모는 총자산을 사용하였으며 이분산성을 통제하기 위해 자연로그 값으로 측정하였다.

$$\text{기업규모(SIZE)} = \log(\text{총자산})$$

3.3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조세회피와 관련성이 있는 기업특성요인이 무엇인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로짓모형을 설정하였다.

$$\text{Tax} = \alpha_0 + \alpha_1 \text{ETR} + \alpha_2 \text{LEV} + \alpha_3 \text{CR} + \alpha_4 \text{CFOTA} + \alpha_5 \text{CC} + \alpha_6 \text{SALG} + \alpha_7 \text{NISAL} + \alpha_8 \text{SIZE} + \text{산업더미} + \text{연도더미}$$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각 설명변수는 세무조사 후 추징세액을 공시한 전연도말과 전전연도 말의 평균으로 계산하였다. 예를 들어, 2010년에 세무조사에 대한 추징세액이 공시되었다면 기업특성변수는 2009년말과 2008년말의 평균으로 계산하였다. 특정연도에 세무조사가 이루어져 추징세액을 공시한 기업을 조세회피기업으로 정의하였지만 기업의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특성은 직전연도 뿐만 아니라 과거 몇 년간의 평균적인 특성일 것이므로 기업특성변수를 평균하여 사용하였다.

기업고유의 특성이외에도 기업이 속한 산업특성에 따라 조세회피성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산업더미를 추가하였다. 산업별 분류는 KisValue의 산업분류 중분류를 이용하여, 유사한 업종별로 6개의 산업군을 형성하였다¹³⁾. 또한 세법개정으로 인한 연도별 조세회피정도의 차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연도더미를 사용하였다.

12) Porcano(1986)은 4가지 규모대리변수(Capital Expenditures, Net Income Before Taxes, Total Assets, Total Sales)를 이용하여 기업규모와 유효법인세율간의 관계분석을 통해, 총자산을 이용할 때 가장 강하고 일관된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주장하였다.

13) 제조업은 1집단, 종합건설업과 전문직별 공사업은 2집단, 도매 및 상품중개업은 3집단, 운송업은 4집단, 출판업, 방송업, 통신업은 5집단, 전문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등은 6집단으로 분류하였다.

IV. 실증분석결과

본 연구는 조세회피와 관련성이 있는 기업특성요인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모수통계인 t-검증과 비모수통계인 윌콕슨(wilcoxon)순위합 검증을 통해서 두 집단간 차이를 알아본 후 로짓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1 기술통계량

<표 2-1>은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를 받아 법인세 등의 추가 납부세액을 공시한 표본기업(조세회피기업)에 대한 각 변수의 기술통계량을 나타내고 있다. 기업의 조세부담측정치인 유효법인세율(ETR)의 평균은 0.252로 표본기업의 조세부담이 25%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LEV)의 경우 평균값과 중간값은 1.144%로 나타나고 있으나, 최대값이 5.141%로 나타났다. 이는 winsorization 기법을 통해 극단치를 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의 경우 여전히 부채비율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자본집중도(CC)는 평균값이 15.970으로 총자산 대비 약 16%정도 감가상각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매출액순이익률(NISAL)은 평균값이 0.082의 값을 보여 매출액 대비 약 8% 정도의 순이익을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2>는 설명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설명변수들 간에는 모두 0.5미만이 나타나고 있어 다중공선성 문제는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표 2-1> 기술통계량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중간값	최대값
ETR	0.252	0.125	-0.348	0.271	0.570
LEV	1.144	0.959	0.101	0.833	5.141
CR	1.936	1.562	0.502	1.509	8.265
CFOTA	0.101	0.116	-0.163	0.094	0.540
CC	15.970	10.183	0.723	15.701	43.815
SALG	1.160	0.249	0.755	1.096	2.290
NISAL	0.082	0.074	0.008	0.062	0.364
SIZE	25.968	1.504	23.411	25.804	29.649

1) ETR: 유효법인세율, LEV: 부채비율, CR: 유동비율, CFOTA: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CC: 자본집중도, SALG: 매출액성장률, NISAL: 매출액순이익률, SIZE: 기업규모

<표 2-2> 설명변수간 상관관계

	ETR	LEV	CR	CFOTA	CC	SALG	NISAL	SIZE
ETR	1	-0.009	-0.072	-0.028	-0.089	-0.112	-0.098	0.186
LEV		1	-0.471	-0.127	0.138	0.046	-0.325	0.097
CR			1	0.158	-0.267	0.046	0.463	-0.238
CFOTA				1	0.067	0.067	0.472	-0.142
CC					1	-0.063	-0.133	0.100
SALG						1	0.231	-0.327
NISAL							1	-0.181
SIZE								1

- 1) 표에 보고된 상관계수는 피어슨(pearson)상관계수이다.
- 2) 변수의 정의는 <표2-1>과 같다.

4.2 단일변량 분석

로짓회귀분석을 하기에 앞서 조세회피기업과 통제기업 간에 재무적 특성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표 3>은 연구에서 고려된 변수들의 표본기업과 통제기업간 평균 및 중간값과 차이검증(t-검증, Wilcoxon 검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분석결과를 보면 유효법인세율(ETR)은 표본기업의 경우 평균(중간값)이 25.2%(27.1%)이고 통제기업은 평균(중간값)이 17.3%(20.8%)로 조세회피기업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t-검증과 Wilcoxon순위합검증 모두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유효법인세율은 예측한 바와 같이 비율이 클수록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조세부담이 큰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재무구조 관련 변수 중에서는 부채비율과 유동비율 변수가 표본기업과 통제기업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채비율(LEV)은 평균과 중간값 모두 조세회피기업이 통제기업 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¹⁴⁾ 이는 본 연구의 표본기간 중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14) Graham and Tucker(2005)는 미국 국세청의 실제 조세를 회피한 44개의 기업 자료를 사용하여 조세회피와 자본구조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세회피 기업의 부채비율의 매우 낮다는

손금불산입 규정이 폐지(2006.1.1)되기 전인 2001년부터 2005년에 해당되는 표본이 전체 표본의 약 81%(=89/110)를 차지하고 있어 이 규정으로 인한 조세부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유동비율(CR)의 경우 표본기업의 평균(1.936)과 중간값(1.509)이 통제기업의 평균(2.692)과 중간값(1.886)보다 훨씬 낮고 그 차이도 1%수준에서 유의하다. 즉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일수록 상대적으로 조세회피에 적극적일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현금흐름 관련 변수(CFOTA)는 표본기업과 통제기업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자본집중도(CC)는 표본기업의 평균이 통제기업의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자본집중도가 높을수록 조세부담이 감소하여 조세회피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예상과 일치하였으나 이와는 달리 중간값은 조세회피기업의 자본집중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이 증가함에 따라 내용연수단축,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임의구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조세회피를 시도할 수 있으므로 자본집중도는 조세회피와 오히려 양(+)의 관련성을 가질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집중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다.

성장률 관련 변수는 예상과 다르게 표본기업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은 법인세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기준이 아니어서 매출이 증가하더라도 세전이익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가 증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매출과 조세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성장기업은 원활한 자본조달을 위해 이익목표치를 달성하려고 할 것이므로 조세회피보다는 재무보고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수익성 관련 변수는 표본기업과 통제기업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기업규모는 표본기업(조세회피기업)이 통제기업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¹⁵⁾ 통제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즉, 기업규모가 클수록 조세회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의 조세지원정책이 중소기업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어 기업 규모가 큰 집단이 작은 집단에 비해 전반적으로 조세부담이 커서 조세회피 가능성이 확대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연구는 사례중심의 44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외적 타당성에 한계가 있고 조세환경이 우리나라와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15) 이는 김진희·정재욱(2006), 고윤성·김지홍·최원욱(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표 3> 표본기업과 통제기업의 변수간 차이검증

변수	Tax=1		Tax=0		t-검증	wilcoxon 검증
	평균	중간값	평균	중간값		
ETR	0.252	0.271	0.173	0.208	0.000	0.000
LEV	1.144	0.833	0.985	0.733	0.059	0.014
CR	1.936	1.509	2.692	1.886	0.000	0.000
CFOTA	0.101	0.094	0.114	0.085	0.281	0.787
CC	15.970	15.701	17.146	14.657	0.239	0.711
SALG	1.160	1.096	1.421	1.172	0.000	0.000
NISAL	0.082	0.062	0.087	0.067	0.464	0.278
SIZE	25.968	25.804	24.838	24.649	0.000	0.000

- 1) 표본기업(조세회피기업)과 통제기업간 평균차이검증(t-검증)에서의 p값.
- 2) 표본기업(조세회피기업)과 통제기업간 Wilcoxon 순위합 검증에서의 p값.
- 3) Tax: 세무조사 후 추징세액을 공시한 기업은 1, 그렇지 않으면 0, ETR: 유효법인세율, LEV: 부채비율, CR: 유동비율, CFOTA: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CC: 자본집중도, SALG: 매출액성장률, NISAL: 매출액순이익률, SIZE: 기업규모

4.3 다변량 분석

단일변량 분석에서는 기업특성변수들을 사용하여 각각의 변수들이 표본기업(조세회피기업)과 통제기업 간에 통계적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단일변량분석으로는 두 기업집단간 특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따라서 종속변수를 과세당국의 세무조사결과 추징세액이 발생하여 이를 공시한 기업인 경우 1, 아니면 0으로 하고 독립변수를 기업특성변수로 하는 로짓회귀분석을 하여 조세회피기업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종속변수로 범주형 변수를 사용한 로짓모형을 사용한 이유는 조세회피금액보다 조세회피 혹은 비회피 동기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표 5>는 로짓회귀분석모형의 결과이다. 우도비(likelihood ratio)의 카이제곱값은 110.752($p=0.000$)로 모형이 유의적인 설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유효법인세율(ETR)은 예측한 바와 같이 유효법인세율이 클수록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효법인세율이 크다는 것은 조세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데,

조세부담수준이 증가하게 되면 납부세액이 증가하게 되고 그 만큼 현금유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조세부담이 큰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부채비율(LEV) 조세회피와 양(+)의 관계를 보였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확보되지 않았다. 유동비율(CR)은 조세회피와 유의수준 1%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였다. 이는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일수록 상대적으로 조세회피에 적극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CFOTA)는 조세회피와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집중도(CC)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집중도가 높은 기업은 감가상각대상자산이 많아 이에 대한 각종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뿐 아니라 감가상각비의 증가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도 감소하게 되어 조세회피를 하고자 하는 유인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출액성장률(SALG)은 예상과 달리 조세회피와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장기업의 경우 원활한 자본조달을 위해 이익목표치를 달성하려고 할 것이므로 조세회피보다는 재무보고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매출액순이익률(NISAL)은 조세회피와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회계이익을 보고하는 경우 그에 따라 증가되는 과세소득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조세회피유인이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업규모(SIZE)는 조세회피와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조세지원정책이 중소기업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어 기업규모가 큰 집단이 작은 집단에 비해 전반적으로 조세부담이 커서 조세회피 가능성이 확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기업규모가 클수록 사회적 의무가 증가하고 이해관계자 또한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규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과세당국은 기업규모가 클수록 세무조사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사정책을 입안하고 있으며 기업규모가 클수록 세무조사효과가 크므로 대기업의 세무조사에 더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¹⁶⁾ 이에 따라 기업규모가 클수록 세무조사 후 상당액의 법인세추징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16) 국세청에서는 매년도 세무조사실적을 국세통계연보에 공표하고 있으며,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7년 조사대상 법인 당 추징세액은 대법인의 경우 3.792백만원이고 중소법인의 경우 300백만원이다.

<표 4> 로짓회귀분석결과

$$\begin{aligned} \text{Tax} = & \alpha_0 + \alpha_1 \text{ETR} + \alpha_2 \text{LEV} + \alpha_3 \text{CR} + \alpha_4 \text{CFOTA} + \alpha_5 \text{CC} + \alpha_6 \text{SALG} \\ & + \alpha_7 \text{NISAL} + \alpha_8 \text{SIZE} + \text{산업더미} + \text{연도더미} \end{aligned}$$

변수	추정계수	χ^2	유의수준
절편	-10.275	26.873	0.000 ***
ETR	2.063	6.910	0.009 ***
LEV	0.038	0.090	0.764
CR	-0.203	5.978	0.015 **
CFOTA	0.902	0.886	0.347
CC	-0.020	3.589	0.058 *
SALG	-1.062	6.875	0.009 ***
NISAL	3.380	4.103	0.043 **
SIZE	0.301	19.748	0.000 ***
산업더미		포함	
연도더미		포함	
모형의 적합도LR(유의수준)		110.752(0.000)	
표본수		3,676	

1) ***,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2) Tax: 세무조사 후 추징세액을 공시한 기업은 1, 그렇지 않으면 0, ETR: 유효법인세율, LEV: 부채비율, CR: 유동비율, CFOTA: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CC: 자본집중도, SALG: 매출액성장률, NISAL: 매출액순이익률, SIZE: 기업규모

V. 결 론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세무조사를 받아 추징세액이 발생하였다고 공시한 거래소상장기업 및 코스닥등록기업을 통제기업과 비교·분석하여 조세회피와 기업특성변수 간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추징세액은 세무조사 후 과세당국에 의하여 강제되는 추가 세금으로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의 실제 조세회피를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에 의한 추징세액을 공시한 기업들을 조세회피기업으로 하고 각 연도별로 추징세액을 공시한 기업과 산업분류상 동일산업에 속하는 모든 기업을 대응표본으로 하여 각 기업특성변수들이 양 기업집단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기업특성변수 중에서 5개 변수가 표본기업과 통제기업 간에 체계적이고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조세회피기업들은 통제기업들에 비하여 기업규모가 크고 부채비율이 높으며 유동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세회피기업은 유

효법인세율이 높았으며 매출액성장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로짓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효법인세율은 예측한 바와 같이 비율이 클수록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조세부담이 큰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유동비율은 조세회피와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일수록 상대적으로 조세회피에 적극적일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자본집중도는 조세회피와 유의한 음(-)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자본집중도가 높은 기업은 감가상각대상자산이 많아 이에 대한 각종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조세회피를 할 유인이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매출액성장률(SALG)은 조세회피와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매출액순이익률(NISAL)은 조세회피와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기업규모는 조세회피와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가 클수록 사회적 의무가 증가하고 이해관계자 또한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규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조세회피와 관련된 실증연구는 자료수집의 제한성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하여 조세회피와 관련된 국내선행연구가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수집 가능한 자료로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조세회피 측정방법을 이용하여 기업특성을 분석한 연구와 달리 세무조사를 받아 실제 조세회피행위가 인정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세회피 기업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요소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조세회피기업으로 포함된 표본은 세무조사에 의한 추징세액을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기업들이다. 따라서 세무조사를 받아 추징세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적인 중요성이 작아서 공시하지 않은 기업들이 통제기업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조세회피기업을 비회피기업과 구별하는 통계적 검증력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과세당국이 제한된 시간과 인원으로 모든 납세자들을 세무조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조사대상법인으로 선정하여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조세회피기업의 예측에 유용한 재무적 변수들을 사용하여 조세회피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세무조사 대상기업으로 선정하는데 활용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세무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윤성 · 김지홍 · 최원욱, 2007, “조세회피와 기업특성 및 기업가치에 관한 연구”, 세무학 연구 제24권 제4호: 9–40.
- 고윤성 · 이영한, 2006, “법인세법상 자급이자 손금한도 초과법인에 대한 실증연구”, 회계 학연구 제31권 제3호: 63–93.
- 고종권, 2003,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이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28권 제2호: 75–100.
- 권순창 · 강영옥 · 김창훈 · 김정환, 2009, “조세회피와 기업특성에 관한 분석”, 국제회계연구 제26집: 189–210.
- 김진동, 2001, “기업특성에 따른 조세부담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논총 제24집: 97–115.
- 김진희 · 정재욱, 2006, “기업의 재무적 특성이 조세회피행위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제23권 제4호: 97–123.
- 박수원 · 이효익, 2005, “법인세추징세액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22권 제1호: 133–155.
- 신현걸, 2002, “상장법인의 세무조정 현황 실증분석”, 세무학연구 제18권 제3호: 169–193.
- 심충진 · 김문현 · 이종운, 2006,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상충관계와 세무조사에 따른 세금비용에 관한 연구”, 2006년 조세개혁 심포지엄 및 춘계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 임진윤, 2006, “세무조사 추징세액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23권 제3호: 167–190.
- 전규안, 1997, “기업특성이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제22권 제4호: 23–60.
- 전규안 · 오웅락, 2003, “거래소기업과 코스닥기업의 특성과 조세부담”, 세무학연구 제20권 제1호: 29–56.
- 최순재 · 이성구, 2005, “다양한 조세혜택 측정치와 기업특성요인의 실증분석”, 서강경영논총 제16권 제2호: 367–389.
- 홍순복 · 심호석, 1999, “세무조사대상 선정의 이론과 현실”, 회계정보연구 제11권: 177–190.
- Desai, M. and D. Dharmapala, 2006, “Corporate Tax Avoidance and High Powered Incentive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79: 145–179.
- Porcano, T. M., 1986, “Corporate Tax Rates: Progressive, Proportional or Regressive”,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Spring: 17–31.